
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방산업체 등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함(안 제13조의3 신설).
-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비용 보조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의2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안 제13조의3은 대상기관¹⁾의 장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관리 계획서 작성 및 이행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, 개정안은 ‘복수국적자’를 “대한민국 국적과

1) 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2. “대상기관”이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가. 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

나. 「방위사업법」에 따른 방위사업청·각군·국방기술품절원·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

다. 그 밖에 기업·연구기관·전문기관 및 대학 등

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”으로 정의하고 있음.

그러나, 현행 「국적법」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복수국적자(複數國籍者)를 “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²⁾으로 정하는 사람”으로 정의하고 있고, 복수국적자의 법적지위 등이 동 법에서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,

법 체계의 통일성 및 용어의 명확성 측면에서 개정안의 ‘복수국적자’를 “「국적법」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”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- 위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.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견
<신 설>	제13조의3(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) ① 대상	제13조의3(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) ① 대상

2) 「국적법 시행령」 제16조(복수국적자의 의의 등)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
 2.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
 3.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
- ②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만 20세가 된 때부터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기간을 계산한다.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건
	<u>기관의 장은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(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.</u> <u>② ~ ④ (생략)</u>	<u>기관의 장은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(「국적법」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.</u> <u>② ~ ④ (개정안과 같음)</u>

- 한편, 안 제14조의2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 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·중견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취지인데,

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필요성에는 일부

동의하나, ① 방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전문인력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, ②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후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함.

-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(전문위원 박 병 섭)